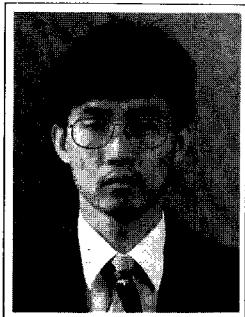


핵비확산조약의 의의와 전망

이 병 육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원자력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핵비확산'이라는 용어는 이라크에 이어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발각되기 전까지는 생소한 단어였다.

걸프전으로 드러난 이라크의 핵개발 추진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조치 결과로 드러난 북한의 핵문제가 계기가 되어, 「핵비확산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 NPT)」을 위반하였느니 안하였느니 하는 문제가 각종 매스컴을 타고 우리의 일상 생

활에 파고 들면서부터 일반 국민들이 핵비확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현재 국제 사회의 핵확산 방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NPT의 주요 골자는 67년 1월 1일 현재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5개국에게는 그 보유 권리를 인정하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던 국가들은 향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IAEA의 안전 조치를 받는 것이다.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쿠바 등 일부 국가들은 NPT가 차별적이며, 핵보유국들에게만 유리하다고 주장하면서 NPT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조약이 차별적이기는 하지만 자국의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원자력을 오직 평화적 목적에 한정하여 이용하겠다고 천명한 국가들은 핵보유국을 포함하여 97년 6월 현재 186개국에 달하고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국제적 조약으로서 자리잡고 있는 NPT는 68년에 체결되

었고 70년 3월 5일 발효되었다.

세계의 핵확산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NPT는 전문과 11조로 구성되어 있다.

NPT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조약 발효 후 5년마다 평가회의가 개최되어 왔으며, 95년 연장회의에서는 조약의 효력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장치가 영구히 확보되었으며, 앞으로도 국제 평화 유지에 기여할 것이다.

핵비확산조약의 체결 배경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이에 관한 구상은 50년 대말 처음 시작되었다.

미국·옛 소련·영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 그 외의 상당수 국가들도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머지 않아 또 다른 핵무기국의 출현이 예상 되고 있었다.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제안은 여러 국가에서 제기되어 유엔(UN) 차원에서 논의되었으나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결론을 보지 못하였고, 아일랜드의 제안이 주목을 받아 후에 핵비확산조약(NPT)의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논의가 유엔(UN)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가 60년 2월, 중국이 64년 10월에 핵실험에 성공하였다.

한편 원자력 평화 이용 분야에 있어서도 원자력 발전을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그 이용 범위도 확대되는 등 원자력 이용 개발이 본격적인 진전을 보이기 시작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핵무기 비확산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미국은 65년 8월 유엔 18개국 군축위원회(Eighteen Nation Disarmament Committee : ENDC)에 핵비확산을 목적으로 한 조약 초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동년 9월 옛 소련이 그 대안을 제시하자 핵비확산에 관한 논의가 가속화되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이 제시한 안은 ① 핵보유국은 핵비보유국에 대해 핵무기를 이전하지 않는다 ② 핵비보유국은 핵무기를 제조·취득하지 않는다 ③ 이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증 수단으로 안전 조치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 핵비보유국

들은 ① 핵보유국에 의하여 핵무기 확산이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비보유국에 대해서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② 핵비보유국은 핵무기를 갖지 않은 채 핵보유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자국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③ 핵비보유국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제약받을 뿐만 아니라 핵폭발 장치의 제조·취득 등의 금지로 인해 그로부터 기대되는 이점도 누릴 수 없게 된다 ④ 안전조치의 적용이 차별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핵비보유국들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핵보유국들은 조약의 초안에 핵군축을 위하여 성실히 교섭하며, 조약이 핵비보유국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평화적 목적의 핵폭발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모든 당사국에 제공한다는 규정을 포함시키는 동시에, 미국과 영국도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시설에 대해 안전 조치를 일부 수락한다고 선언함으로써 타협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NPT가 68년 7월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고, 미국·영국·옛 소련이 기탁국으로 지정되었으며, 기탁국을 포함한 43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70년 3월 발효되었다.

NPT의 목적 및 기능

핵비확산조약(NPT)은 핵무기 보

유국을 67년 1월 1일 당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미국·옛 소련·영국·프랑스·중국으로 동결시킴으로써, 핵전쟁의 가능성을 줄여 세계를 보다 안전하게 하고 핵무기 개발에 소요되는 자원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으로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태동되었다. 그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 핵무기의 비확산(수평적 확산 방지)

② 핵군축(수직적 확산 억제)

③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이러한 목적의 NPT는 체결 당시 드러난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의 차별성, 즉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보유 권리, 핵비보유국에 대한 전면 안전 조치 실시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으나, 전후의 국제 정치에서 핵비확산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고 여러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NPT 가입국은 UN 회원국보다 1개국이 많은 186개국에 이르고 있어 핵비확산조약으로서 전세계적인 것이 되었다.

둘째, NPT는 다른 조약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즉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UN 차원의 국제적인 제재의 대상이 된다.

셋째, 조약 발효 후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없다. 이는 조약의 중요한 성과로 간주되고 있다.

물론 NPT 비가입국들 중에서 핵

무장의 의심을 받고 있는 국가도 있고 NPT 가입국이면서도 핵개발을 추진한 이라크와 핵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 등이 있으나 핵무기를 확실히 보유한 국가는 없다.

넷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국제 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원자력 국제 협력에서 안전 조치의 적용이나 수출 통제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수입국의 부담이 증가하고, 민감 기술이나 물질에 용이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평화적 이용에 한정한 원자력 국제 협력은 활발히 이루어졌다.

다섯째,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핵군축협정의 체결과 전면핵실험 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 CTBT)의 체결이다.

이들 국가의 핵군축협정의 체결은 동서 냉전의 종식에 따른 부산물이기도 하지만, NPT 조약상에서 보면 핵군축 의무를 일부분 이행한 것이며, 전면핵실험금지조약의 체결은 핵군축 의무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평가되고 있다.

NPT의 주요 내용과 의의

핵비확산조약(NPT)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과 군사적 목적의 전용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에 관한 내용을 서술한 전문 12항과 본문 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항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 문

NPT 전문은 핵전쟁의 참화와 전쟁의 위험을 방지하고, 인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활동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조치를 적용하고,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은 모든 당사국에게 제공하며, 핵무기 개발 경쟁의 중지와 핵군축을 위해 모든 국가가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전문은 NPT의 기본 정신과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하의 각 조항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제1조 : 핵보유국의 의무

제1조는 핵보유국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핵무기 보유 당사국은 여하한 핵무기나 기타의 핵폭발 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나 폭발 장치에 대한 관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수령자에 대하여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핵보유국이 핵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의 양도나 그 개발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으로서, 핵비보유국들이 핵무기를 획득할 수 있는 한 경로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를 개발하려는 국가는 핵비보유국과

들간의 협력을 통하여나 또는 독자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므로, 핵무기에 접근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나 NPT는 핵무기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이 핵비보유국에 이전되지 않는 한 핵비보유국의 영토에 핵무기 배치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예는 주한 미군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였던 데서 볼 수 있다.

핵폭발 장치에 관한 금지 범위는 평화적 목적의 핵폭발 장치의 이전·제조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NPT에서는 핵폭발 장치의 범위를 평화적 목적 및 군사적 목적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중남미핵무기금지조약에서는 평화적 목적의 핵폭발 장치 제조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3. 제2조 : 핵비보유국의 의무

제2조는 핵비보유국의 의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핵무기 비보유 조약 당사국은 어떠한 핵무기나 기타의 핵폭발 장치 또는 그 관리권을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양도자로부터도 양도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핵무기 개발 시도 금지 조항으로서 추가의 핵확산을 방지하는 NPT 목적 달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핵무기 비보유국이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의 제조나 획득을 하지 않겠다고 국제적으로 선언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제

1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더라도 핵무기 취득의 2차적인 경로를 차단하는 장치가 된다.

핵비보유국들의 핵무기 비취득 약속은 주변 국가들의 핵무기 획득 동기를 완화시키고 원자력 이용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며, 핵비확산에 관한 국제적인 규범을 전세계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조항에서 언급하는 핵폭발 장치에 관한 금지 조항은 1조의 내용과 같다.

4. 제3조 : 안전 조치, 수출 통제

이 조항은 핵비보유국에 대한 IAEA의 전면 안전 조치 적용, 원자력 수출 통제, 안전 조치의 적용 및 이를 위한 IAEA와의 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은 2조에서 규정한 핵무기 개발 시도 금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수단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핵비보유 당사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으로부터 핵무기나 기타의 핵폭발 장치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물질 및 시설에 IAEA의 안전 조치 적용을 약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핵비보유국들의 안전 조치 적용은 자국의 원자력 활동이 평화적 목적에 한정한다는 것을 주변 국가에 보여줌으로써 지역적 안정 및 신뢰 구축에 기여하게 되며, 어떤 국가가 안전 조

치하에서 핵무기를 은밀히 개발할 경우 많은 비용과 발각될 위험을 수반하게 한다.

이 조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 조치는 핵비보유 당사국의 영역 내 또는 관할하에서 행해지는 모든 원자력 활동의 선원 물질 또는 특수 핵분열성 물질에 대해서 적용된다.

따라서 NPT 발효 이전에 적용되어 왔던 부분적 안전 조치보다는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안전 조치의 적용은 평화적 목적의 핵물질과 장비의 국제 교역 및 원자력 이용 개발 활동에 있어서 조약 당사국의 경제적 또는 기술적 개발에 대한 방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안전 조치가 실시되더라도 당사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 개발에 해를 끼쳐서는 안되며, 안전 조치가 평화적 이용 개발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원자력 국제 정세는 안전 조치와 같은 핵비확산 통제가 평화적 이용 개발에 우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IAEA 안전 조치 체계의 강화(Strengthened Safeguards System : SSS)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의 적용을 위한 의정서가 IAEA와 각국간에 체결되면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강화된 안전 조치 체계는 선언하지 않고 비밀리에 행하는 원자력 활동을 탐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면 안전 조치를 받고 있던 이라크·북한 및 이란의 핵개발 의혹이 대두되면서부터 추진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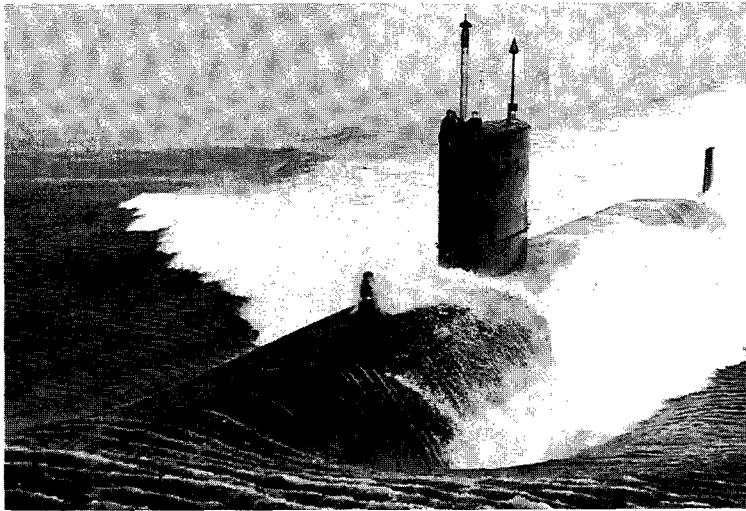
원자력 수출 통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약 당사국들은 안전 조치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평화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핵물질이나 이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되는 장비를 핵무기 비보유국에게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원자력 수출 통제 그룹인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를 발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위원회는 원자력 수출 통제 품목을 설정하고 수출의 전제 조건으로서 IAEA의 안전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 통제의 적용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 및 교역이 국제적인 통제 체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하며, 원자력을 수출하는 국가의 의도에 반하여 수출이 핵확산으로 연계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여 안전 조치의 적용과 더불어 NPT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5. 제4조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제4조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조항으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개발에 있어서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권리에 영향을



핵잠수함. 핵비확산조약(NPT)의 목적은 핵무기의 비확산(수평적 확산 방지), 핵군축(수직적 확산 억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등으로 요약된다.

주지 않으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장비·물질 및 과학 기술 정보의 최대한의 교환을 용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핵무기나 기타의 핵폭발 장치의 제조 또는 획득을 포기하는 반대 급부로서 핵비보유 당사국들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보호하고 선진국들의 국제 협력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평화적 이용 개발을 위한 원자력 교역의 촉진을 합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동시에 각 국가를 NPT에 가입시키기 위한 유인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발 도상국들은 다섯 차례에 걸친 평가회의 개최시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술 및 물질의 접근 증대를 요구하여 왔으며, 안전 조치, 수출 통제 그리고 원자력 공급국들의 대외 정책 등으로 인하여 조약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NPT에서 추구하는 수평적 핵확산 방지는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평화적 이용 개발과 관련한 조항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안전 조치 강화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어 각 국가의 원자력 투명성이 확보되면 원자력 이용 개발에 대한 국가간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6. 제5조 : 평화적 핵폭발

제5조는 평화적 핵폭발에 관한 조항으로서, “조약 당사국은 적절한 감시하에서 국제적 절차를 통하여 핵폭발의 평화적 응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 이익을 핵비보유 당사국에게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조약 체결 당시까지만 해도 토목 공사 등에 핵폭발 장치를 이용하려는 타당성 조사가 행해지고 있었고, NPT 제2조에서 규정한 바

와 같이 핵비보유 당사국들이 어떠한 기타의 핵폭발 장치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핵비보유국들의 권리 포기를 반영하여 삽입한 것이다. 그러나 핵폭발 장치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이익이 별로 없으며, 핵폭발로 인한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사문화된 조항으로 간주되고 있다.

중국은 전면 핵 실험 금지 조약(CTBT)이 체결된 96년까지도 평화적 핵폭발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국제 사회가 평화적 핵폭발과 군사적 용도의 핵실험간에 차이가 없다고 이를 반대하여 좌절되었다.

7. 제6조 : 핵군축

제6조는 핵보유국들의 핵군축에 관한 조항으로서, “조약 당사국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 경쟁을 중지하고 핵군비 축소 및 완전한 군축에 관한 교섭을 성실히 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NPT의 체결 배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핵비보유국들의 요구로 조약에 삽입되었으며, 핵비보유국들을 NPT에 가입시키기 위한 유인 요소이기도 하다.

핵군축 논의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결과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 I, II)을 체결하여 일부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핵군축 문제는 조약 평가회의시마

다 제기된 의제로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핵비보유국들이 계속해서 촉구한 사항이다.

95년 개최된 NPT 연장회의에서도 비동맹 그룹을 중심으로한 핵비보유국들은 완전한 핵군축 및 CTBT의 체결을 NPT 연장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핵비보유국들의 요구는 NPT를 연장시키면서 채택한 결의안에 규정되어 있으며, CTBT가 96년 체결되어 제6조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법적인 기반이 구축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비동맹 그룹은 핵무기의 완전한 철폐를 촉구하면서 이를 위한 일정 제시와 이에 관한 조약 체결을 세네바군축회의에서 제의하고 있다.

8. 제7조 : 비핵 지대 설정

제7조는 당사국의 비핵 지대 설정 권리를 명시한 조항으로서, “여러 국가들이 핵무기의 전면적 부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적 조약을 체결할 권리에 대하여 NPT의 어떠한 규정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당사국들이 특정의 지역을 설정하고 이 지역에서의 핵무기 제조·개발·사용·반입·배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비핵지대조약은 이를 체결하는 국가들이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역내 국가들간의 신뢰를 증진시키며,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사용이나 배치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비핵지대조약은 참여 국가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상의 규정과 핵보유국 및 역내에 관할권이나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의정서로 구성된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비핵지대에 대하여 핵보유국들이 서명·발효하게 되면, 그 지역은 NPT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현재 비핵지대조약은 중남미·남태평양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효중이며,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비핵지대조약을 체결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발효될 전망이다.

9. 제8조 : 조약의 개정 및 평가 회의 개최

제8조는 조약의 개정 및 평가회의 개최에 관한 조항으로서, “모든 조약 당사국은 조약의 개정안에 대한 제출권을 가지며, 조약 당사국의 1/3 이상의 요청으로 개정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의 개정을 위해서는 NPT에 가입한 모든 핵보유국과 개정안 배포 시점에 IAEA 이사국인 조약 당사국 전체의 찬성을 포함하여 전체 조약 당사국 과반수의 찬성 투표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NPT는 조약의 목적과 규정

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증할 목적으로 매 5년마다 평가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75년 1차 평가회의를 시작으로 95년까지 5차례의 평가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차기 회의는 2000년에 개최될 계획이다.

95년까지 개최된 평가회의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을 보면 핵보유국을 포함한 원자력 선진국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수출 통제를 강화시킬 것을 주장한 반면, 개발 도상국들은 핵비확산 체제의 강화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저해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95년 조약을 연장시키면서 채택한 「핵비확산 및 원칙에 관한 결의안」에는 이러한 양측의 입장이 절충되어 있어 향후 조약을 평가할 때 기본 지침으로 활용될 것이다.

10. 제9조 : 조약의 가입 및 핵보유국의 정의

제9조는 조약의 가입, 비준서 기탁 및 각 국가의 조약 발효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각 국가는 본 조약에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으며, 비준서의 기탁국 정부는 미국·영국·러시아이다.

또한 핵무기 보유국은 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고 폭발시킨 국가로 정의하고 있다.

인도는 74년 핵폭발 실험을 행하

였으나, 국제 사회에서는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11. 제10조 : 조약 탈퇴 및 유효 기간 연장

제10조는 조약의 탈퇴 조건과 조약 연장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조약의 탈퇴는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 사태가 자국의 이익에 해로운 경우 탈퇴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의 탈퇴는 3개월 전에 조약 당사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통고하고, 비상 사태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조약 발효 후 탈퇴를 선언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으며, 탈퇴 선언 후 다시 특수한 지위로서 잔류하겠다고 표명하여 실제적으로 탈퇴한 국가는 없다.

조약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약 발효 후 25년이 경과한 후 무기한·유기한 또는 일정 기간씩 계속 연장할 것인지에 대하여 조약 당사국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약 체결 당시 조약을 무기한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많으므로, 우선 조약을 25년간의 유효 기간으로 발효시키고 그 실효성을 검토한 후에 조약의 유효 기간을 결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95년 5월 회의를 개최하여 NPT의 효력을 무기한으로 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비핵지대조약이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등 핵비확산 관련 조약들은 유효 기간이 무기한이다.

12. 제11조 : 공식 언어

제11조는 조약의 공식 언어로서 영어·러시아어·프랑스어·스페인어 및 중국어로 작성된 본 조약은 모두 정본이며, 기탁국 정부에 기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후 전망

핵비확산조약(NPT)은 핵확산 방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군축에 관한 강력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많은 학자 및 전문가들은 NPT 발효 이후 핵무기를 보유한 당사국이 없으며, START 등의 체결로 부분적이나마 핵군축이 이루어졌고, 적절한 통제하에서 국제 협력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조약은 성실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핵보유국들간의 핵무기 성능 향상을 위한 협력 및 완전한 핵군축의 미이행, 이라크 및 북한의 핵개발 의혹 대두,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부담 요소(안전 조치, 수출 통제)의 강화는 NPT 규정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핵비확산 체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NPT가 무기한 연장됨에 따라 핵무기 확산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항구적으로 확보되었다. 따라서 NPT의 무기한 연장을 계기로 NPT의 국제법적 지위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핵무기를 확보하는 국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조치의 합법적 근거를 보다 강화 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NPT는 핵비확산을 위한 수단인 동시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근본적으로 핵비확산 체제의 강화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개발 증진은 동시에 추진될 수 없는 배반성을 가지고 있다.

IAEA의 안전조치제도 강화, 원자력수출통제제도의 강화는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지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는 국가들에게는 부담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조약 발효 후 원자력 이용 개발 환경은 핵비확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원자력의 양면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핵비확산 제도의 강화로 세계 각국의 원자력 이용 개발에 대한 투명성이 증진되면 원자력 이용 개발 및 국제 협력 환경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